「가족사랑자유적금」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가족사랑자유적금(이하 '이 적금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.

제3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

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년, 2년, 3년으로 합니다.

제4조 저축방법 및 저축한도

- ① 이 적금의 저축금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금액을 달리하여 수시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. 단, 만기 1개월전까지만 저축이 가능합니다.
- ② 월별 저축한도는 1,000만원으로 합니다. 여기서 "월별"의 "월"은 해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합니다. 단, 계약기간의 2/3가 경과한 때에는 이미 적립한 금액의 2/3을 초과하여 저축할 수 없습니다.

제5조 이율의 적용

- ① 이 적금의 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이 적금의 이율 (이하 '기본이율'이라합니다)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율에 해당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
- 1. KB국민은행에 가족 고객으로 등록된 가족구성원 (가입자 본인을 제외하며,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) 수에 따라 1명인 경우 연 0.1%p, 2명이상인 경우 연 0.2%p
- 2. 계약기간 중에 목표금액을 달성한 경우 아래의 이율

목표금액	우대이율
3백만원 ~ 5백만원미만	연0.05 %p
5백만원 ~ 1천만원미만	연0.10 %p
1천만원이상	연0.15 %p

- 3. 계약기간 중의 KB국민카드(KB국민비씨카드·KB국민체크카드 포함, 기업회원카드 제외) 청구금액 합계액이 이 적금의 저축금액 합계액 이상인 경우 연 0.1%p
- 4. 사랑나눔 우대이율(2013.11.25 이후 신규 계좌에 한하여 적용)
 - :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 적금을 가입하는 고객의 경우 연0.2%p 우대이율 제공
 - ※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
제6조 특별중도해지

- 이 적금의 계약기간이 2/3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. 이 때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우대이율은 가산하지 않습니다.
- 1. 이 적금 가입시 가입자가 지정한 목표금액(3백만원 이상)을 달성한 경우. 단, 계약기간의 2/3가 경과한 이후에 목표금액을 달성한 계좌는 목표금액 달성일 익일부터 특별중도 해지 가능
- 2. 계약 기간의 2/3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 적금 가입자 본인(배우자 포함) 또는 본인 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이 회갑 · 칠순 · 팔순 · 결혼 · 해외여행 · 해외 유학 · 대학입학 ·출산 · 질병(상해) 등에 의한 입원 · 사망한 경우